

<p>○ 구로구 오류동 14~50번지 일대 국·공 유지 2,126㎡와 사유지 10,762㎡ 등 12,888 ㎡의 토지에 대하여 신규로 오류 제2주 택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 으로서,</p> <p>○ 예정구역 내에는 91필지의 사유지가 있 고, 또 구역 내에는 78동의 주거용 건 물이 있으나 평수가 적은 소필지가 대부 분이고 지상건물도 10년 내지 20년 이 상된 노후 불량건물의 밀집지역으로, 지 역 내에는 226세대가 거주하고 있음.</p> <p>○ 이 지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지역 내 차량통행이 어렵고, 상·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개별건축이 어려운 실정으로 주민들이 토지는 77%, 건물은 82.4%의 동의를 받아 재개발을 추진하고 자 한 것으로,</p> <p>○ 이 지역의 토지 이용도를 제고하고 주민 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요구의사와 같이 재개발지구로 지정되도록 동의 의견임.</p>	<p>○ 본 재개발구역 변경결정안은 '73.12에 구 역 지정되었다가 '82.4에 구역이 변경결 정된 바 있는 동작구 상도동 산 64~ 39번지 일대 기정정된 26,729㎡의 재개발 구역 중 11,886㎡를 해제하여 14,843㎡로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안임.</p>				
<p>○ 이 지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지역 내 차량통행이 어렵고, 상·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개별건축이 어려운 실정으로 주민들이 토지는 77%, 건물은 82.4%의 동의를 받아 재개발을 추진하고 자 한 것으로,</p> <p>○ 이 지역의 토지 이용도를 제고하고 주민 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요구의사와 같이 재개발지구로 지정되도록 동의 의견임.</p>	<p>○ 본 구역은 사업시행 단계에서 일부 토지 소유자와 건물소유자들이 기정 재개발구역 에서 벗어나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조합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관련토지주의 88.5%의 동의를 받아 구역 을 해제하고자 한 것으로 구역 변경안에 는 동의 의견임.</p>				
<p>5. 심사결과 보류</p>	<p>※ 변경구역에 대한 도면을 보면, 구역 해제지역에 조합주택을 건설하여 존치지 역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하나, 존치지역이 지형상 장방형을 이 루고 있고, 고지대에 아파트를 건축할 시 스카이라인 조정 등 다소 어려운 문제점이 예상되어 사업시행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됨.</p>				
<p>5. 심사결과 보류</p>	<p>5. 심사결과 보류</p>				
<table border="1"> <tr> <td>의안 번호</td> <td>20</td> </tr> </table>	의안 번호	20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의안 번호</td> <td>59</td> </tr> </table>	의안 번호	59
의안 번호	20				
의안 번호	59				
<p>1. 건명 : 상도 제9주택개발구역 변 경결정</p> <p>2. 제안이유 : 상도 제9주택개발구역 변 경결정(일부해제)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</p> <p>○ 위치 : 동작구 상도동 산 64~39번지 일대</p> <p>○ 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면적 : 11,886㎡(사유지 11,886㎡)</li> <li>• 건축률 : 13동(유허가 1동, 무허가 12동)</li> <li>• 세대수 : 33세대(가옥주 13, 세입자 20)</li> <li>• 도시계획사항 : 일반주거지역</li> <li>• 주민동의율</li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토지면적 11,886㎡ : 동의 10,530㎡ (88.5%)</li> <li>○ 토지소유자 34명 : 동의 32명(94.1%)</li> <li>○ 건물소유자 13명 : 동의 13명(100%)</li> </ul> </ul>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</p>	<p>1. 건명 :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</p> <p>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 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</p> <p>○ 위치 : 노원구 월계동 794 산 3-1</p> <p>○ 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면적 : 1,621,000㎡ → 1,623,809㎡(증 2,809㎡)</li> <li>• 도시계획사항 : 자연녹지지역</li> <li>• 공람공고중 의견접수 : 없음.</li> </ul>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</p> <p>○ 본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은 노원구 월계동 794와 산 3-1에 있는 기존 월 계근린공원의 불합리한 공원경계를 조정하 기 위하여 당초 공원면적 1,621,000㎡를 1,623,809㎡(증 2,809㎡)로 변경하고자 한 것이며,</p> <p>○ 본 공원경계 조정과 관련하여 공원과 인</p>				

<p>접된 자연녹지지역에 자동차학원을 설립하고자 학원 최소면적(6,600㎡)에 미달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원에서 해제될 2,247㎡를 자연녹지지역에 포함시키고, </p> <p>○ 대신 자연녹지 상단 계획도로 월편에 있는 자연녹지 3,120㎡를 공원에 편입코자 하는 내용으로서,</p> <p>○ 공원 경계조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건은 현지확인후 처리의견임.</p> <p>5. 심사결과 보류</p>	<p>보류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auto; margin-right: 0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의안</td><td style="padding: 2px; text-align: center;">62</td>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번호</td><td></td></tr> </table>	의안	62	번호	
의안	62				
번호					
<p>1. 건명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</p> <p>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</p> <p>○ 위치 : 마포구 성산동 590, 592 일대</p> <p>○ 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일반상업지역→유통상업지역(54,000㎡)</li> <li>• 도시계획사항 : 일반상업지역</li> <li>• 주민의견 청취결과 : 없음.</li> </ul>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</p> <p>○ 본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은 마포구 성산동 590, 592 일대 현재의 자동차 검사장 54,000㎡의 일반상업지역을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,</p> <p>○ 자동차검사장은 특정한 설비의 설치가 요구된 시설이므로 시설의 성질에 빽아 일반상업지역보다는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토지의 합리적 이용에 적합하다고 사료되므로,</p> <p>○ 시에서 제출한 변경결정안에 동의 의견임.</p> <p>5. 심사결과 보류</p>					
<p>1. 건명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</p> <p>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</p> <p>○ 위치 : 서초구 양재동 12 일대 및 서초동 1366 일대</p> <p>○ 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용도지역변경 : 일반주거지역→일반상업지역(43,230㎡)</li> <li>• 용도지구지정 : 도시설계지구(43,230㎡)</li> </ul> <p>5. 심사결과</p>	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auto; margin-right: 0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의안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 text-align: center;">63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번호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의안	63	번호	
의안	63				
번호					